

#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632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2년 02월 09일
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제명을 일·생활균형으로만 국한하게 되면 조례에서 규율하고 있는 강소기업 전체 지원사업에 대한 대표성으로 적합하지 않아 조례 제명을 현행대로 함.

## 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조례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일·생활균형 강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」에서 「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」로 변경함.

#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명 “서울특별시 일·생활균형 강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”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정안	수정안
서울특별시 <u>일·생활균형</u> 강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	서울특별시 <u>강소기업 육성</u> 및 지원 조례

##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기업의”를 “우수한 청년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선정·육성·지원”을 “선정·지원”으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“(종합육성계획 등)”을“(종합지원계획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체계적인 지원과 육성”을 “고용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”으로, 같은 항 부터 제3항까지 중 “종합육성계획”을 각각 “종합지원 계획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호 중 “종합육성계획”을 “종합지원계획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6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강소기업 인증서 교부

7.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

제13조를 삭제하고,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한다.

제13조(중전의 제14조)의 제목“(인증기간)”을“(강소기업 인증기간)”

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제13조에 따른”을 “강소  
기업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여 <u>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</u> 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우수한</u> <u>청년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기</u> <u>업의</u> -----.</p>
<p>제3조(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) 강소기업의 <u>선정·육성·지원</u>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	<p>제3조(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) ----- <u>선정·</u> <u>지원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5조(종합육성계획 등) ① 시장은 강소기업의 <u>체계적인 지원과 육성</u>을 위해 3년마다 <u>종합육성계획</u>을 수립·시행한다.</p> <p>② 시장은 <u>종합육성계획</u>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시장은 <u>종합육성계획</u> 및 시행계획의 추진결과와 성과 등을 평가하고 이를 다음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.</p>	<p>제5조(종합지원계획 등) ① ----- <u>고</u> <u>용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</u>----- <u>종합지원</u> <u>계획</u>-----.</p> <p>② ----- <u>종합지원계획</u>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<u>종합지원계획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9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제5조의 <u>종합육성계획</u> 및 시행계획의 수립·평가에 관한 사항</p> <p>3. (생 략)</p>	<p>제9조(위원회의 기능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종합지원계획</u> -----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(강소기업 지원) 시장은 강소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생 략)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12조(강소기업 지원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강소기업 인증서 교부</u></p> <p>7. <u>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</u></p>

6. (생략)

제13조(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) ①

시장은 강소기업 중 고용환경 진단·상담 및 고용개선 실적평가 등을 통해 고용환경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에게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.

③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4조(인증기간) 제13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. 다만, 인증기간 만료 이전 또는 이후 해당 기업이 재 인증을 요청하는 경우 평가를 통해 재인증할 수 있다.

제15조 ~ 제18조 (생략)

8. (현행 제6호와 같음)

<삭제>

제13조(강소기업 인증기간) 강소기업 -----  
-----.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14조 ~ 제17조 (현행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)